

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립도서관
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 월 3 일

여 수 시 장 권오봉



여수시 조례 제1682호

붙임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조례 제1682호

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청년 도서 구입 지원) 시장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청년 (「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)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취업·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「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인증된 지역서점에서 청년이 취업·창업분야의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6조(청년 도서 구입 지원) 시</u> 장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청년 (「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 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)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취업·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「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인 증된 지역서점에서 청년이 취 업·창업분야의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<u>제36조 · 제37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37조 · 제38조 (현행 제36조 및</u> 제37조와 같음)</p>